2020년도 제35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자 : 2020. 12. 11.(금요일)

o 방　　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

- 심의위원: 권헌영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정인 위원, 임형주 위원, 홍지만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•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건(안건번호 제2020-165731호~165780호)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65731호~165780호{'□□□□□□□' 사이트의 '(영화)테넷(2020)' 등 60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 이에 심의안건 모두 가결의견임

- B 위원: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. 모두 가결 처리함이 상당합니다.

- C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65731호~165780호{'◎◎◎◎◎◎◎' 사이트의 '(영화)테넷(2020)' 등 60건의 게시물}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. 다만,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- D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영화, 방송 콘텐츠에 관한 것들로 그 중에는 (영화) 담보 (2020), (영화) 렛 힘 고 (2020), (방송) 츠키우타 (2020), (방송) 설국열차 (2020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
- E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65731호~165780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, 방송)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"시정권고" 가결 의견임. 단, 기 삭제되거나, 전송중단되어 있는 게

시물에 대해서는 "경고의 시정권고" 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.

2020년 제35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12. 18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임형주

위원 홍지만